

동작구의회공고 제2019-36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조례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되었는바, 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강화하여 위원회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실질화·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위원 구성 추가(안 제2조)
- 나. 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3조)
- 다. 위원의 연임 제한과 해제 사유 추가 (안 제4조)
- 라. 회의는 정기회·임시회로 구분하고, 소집절차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를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상임위원회 의원
2.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청소년단체·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단체,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건전육성·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자문
5.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등
7.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
8. 청소년 수련 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9. 주요 청소년사업 및 시설의 위·수탁, 심의의결·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1항 중 “위원은 재임 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을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임기는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제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 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중 “주사로”를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작성·비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출석발언)”을 “(의견청취)”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u>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육성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② (생략)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 복지환경국장, 어르신청소년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u>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u><신 설></u>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① -----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 -----. 제2조(구성) ① <u>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u>----- ----- ----- <u>구성</u> 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u>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다음 각 호의</u> <u>자 사람</u>----- ----- ----- -----. <u>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u>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성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 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하는 소관상임위원회 의원

2.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청소년단체·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단체,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건전육성·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자문
5.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등

7.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8. 청소년 수련 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9. 주요 청소년사업 및 시설의 위·수탁,
심의의결·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 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 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한 차례만 연임--. 다만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임기는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장이 된다.

② (생략)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생략)

<신설>

<신설>

<신설>

3.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 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u>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u> ② <u>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u> ③ <u>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u>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복지업무담당 <u>주사로</u> 한다.	제7조(간사) ----- ----- ----- <u>팀장으로</u> -----.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u>작성·비치하여야</u> 한다.	제8조(회의록) ----- ----- <u>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u> -----.
제9조(<u>출석발언</u>)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u>출석·발언하게</u> 할 수 있다.	제9조(<u>의견청취</u>) ----- ----- ----- <u>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수당 등) ----- ----- ----- <u>범위에서</u> ----- ----- -----.